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764

발의연월일: 2024. 10. 17.

발 의 자:김위상・우재준・김종양

강대식 • 백종헌 • 박덕흠

김형동 • 박정훈 • 임이자

송언석 • 박성훈 • 서범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자에게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권리구제를 위한 시정신청 등 적극적인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경우,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노동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노동위원회 구성 변경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호, 제6조제6항제2호, 제6조의2제1항,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4항, 제23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47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 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중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차별적 처우 · 불리한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로 한다.

제6조제6항제2호 중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정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차별적 처우·불리한 처우 시정사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정사건 및 「근로기준법」 제76조의4에 따른 불리한 처우 시정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차별적 처우 시정 등"을 "차별적 처우·불리한 처우 시정 등"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을 "차별적 처우·불리한 처우 시정사건"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을 "차별적 처우·불리한 처우 시정사건"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 등"을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남 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근로기준 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불리한 처우의 시정 등"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을 "차별적 처우·불리한 처우 시정사건"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정 개 아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 무)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무)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 , 「근로기준법 , 「근로 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 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 행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판정 • 결정 • 의결 • 승인 •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 별적 처우・불리한 처우 시정 정 등에 관한 업무 등에 관한 업무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 ⑤ (생 략)

- ⑥ 공익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위촉한다.
- 1. (생략)
- 2.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남 년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 1항에 따른 시정사건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을 담당하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 3. (생략)
- ⑦ (생략)
- 제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전 권리구제 대리) ① 노동위원회 는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결 정·승인·인정 및 <u>차별적 처</u> 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 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 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 다.
 - ② (생략)

제9조(위원장) ① ~ ③ (생 략) 제9조(위원장) ① ~ ③ (현행과

④ 노동위원회 위원장(이하

6	 	

- 1. (현행과 같음)
- 2. 차별적 처우·불리한 처우 시 정사건(「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정사건 및 「근로기준법」 제76조의4 에 따른 불리한 처우 시정사 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3. (현행과 같음)
 - ⑦ (현행과 같음)

세6조의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①	
	처우・
불리한 처우 시정 등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장) ① ~ ③ (현행괴 같음)

4 -----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 <u>차별적 처우 시정사</u> 건,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제11조(상임위원) ① (생 략)

- ②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 회의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 건, <u>차별적 처우 시정사건</u>, 조 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 ③ (생략)
- 제15조(회의의 구성 등) ① ~ ③ (생 략)
 -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며, 「기간제 및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산업현장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법률」
 또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법률」에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 등과

		_
	<u></u> 차별적 처우·불i	<u>-</u>
	한 처우 시정사건	_
		날
	②	_
	차별적 처우·불리한 처·	_ <u>_</u>
	<u>시정사건</u>	-
	③ (현행과 같음)	
제	15조(회의의 구성 등) ① ~ 🤅	3)
	(현행과 같음)	
	4	_
		_
		_
		_
		_
		_
	「산업현장 약	일
	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역	
	립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차별?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 ⑤ ~ ⑨ (생 략)
- 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 ③ (생 략)
 - ④ 노동위원회는 심판사건과 차별적 처우 시정사건의 신청 인이 제출한 신청서 부본을 다 른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 여야 한다.
 - ⑤ (생략)

<u>처우·물리한 처우의 시청 능</u> -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4
차별적 처우·불리한 처우 시
<u>정사건</u>
⑤ (현행과 같음)